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I 지정 목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지원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향후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9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21년 9월 29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2 | 사회적 목적 실현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 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p> <p>-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p> <p>※ 실적 산정 기준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p> <p>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p> <p>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p>
일자리 제공형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p>
지역사회 공헌형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p> <p>㉠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p>

구분	내용
	<p>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p> <p>㉠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p>㉡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혼합형	<p>○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p>
기타(창의·혁신)형	<p>○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p>

3 |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 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1 ('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8.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2 ('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으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으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6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 예시: '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19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년 12월 까지 신청제한, '21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III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 기타 ③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1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20년도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충족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타 자활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2 | 사회적 목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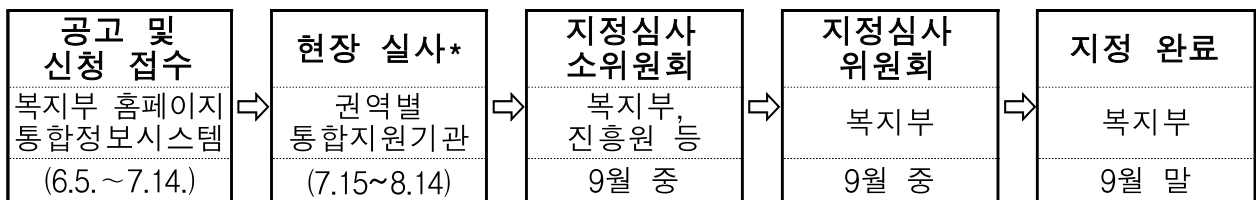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

IV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 (공모일정) '20. 6. 5 ~ 7.14 (40일간)
-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절차) 현장실사(권역별통합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 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현장실사 진행시 '서류검토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2 지정결과 발표 : 2019년 9월 말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
 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V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 접수기간 : '20. 6. 5 ~ 7.14 (40일간)

2 |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
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0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4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
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 문의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1661-4006)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유형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붙임 1】 2.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2】	
조직형태 관련서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 서류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취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 【붙임 8】 3.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붙임 5】 2. 취약계층 고용증빙 자료	
혼합형 및 기타(창의 혁신)형		1-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붙임 6】 1-2.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붙임 7】 2-1. (혼합)취약계층 고용증빙 2-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구분		유형	제출서류 세부사항
영업활동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10】
추가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c-cmail@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cbse@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gmail.com